

Deloitte.

세무관세 뉴스

4월 2024



주목할 만한 사항

조세행정

- 호치민시 세무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도구를 안내함.

개인소득세 ("PIT")

- PIT 확정신고 시 보험료 공제 안내
- 세금 강제징수 대상기업의 법적 대표자 출국

관세 및 무역

- ("AKFTA")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AKFTA") 원산지 규정 이행에 관한 개정 및 보완
- 화학 제품 및 기본화학물질에 대한 VAT 감면
- 특수 전자 장비에 대한 VAT 감면
-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에 대한 현지 수출입 통관절차

법인소득세 ("CIT")

- 독립지점에서 종속지점으로 전환시 손실 이월

간접세 ("VAT")

- 지점 운영 종료 후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VAT") 이전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저작권 서비스에 대한 FCWT 신고 및 납부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조세행정 지침 문서

호치민시 세무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도구를 안내함.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호치민시 세무국은 제5691/TB-CTPHCM호 통보를 발표하여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전자 정보 포털 (hoadondientu.gdt.gov.vn) 및 App Store (iOS용) 또는 CH Play (Android용)에 " TCT E-Invoice " 응용을 사용하여 계산서를 조회/검증하고 오류 및 불법 계산서를 바로 발견할 수 도록 안내한다.

(호치민시 세무국의 2024년 4월 2일 제5691/TB-CTPHCM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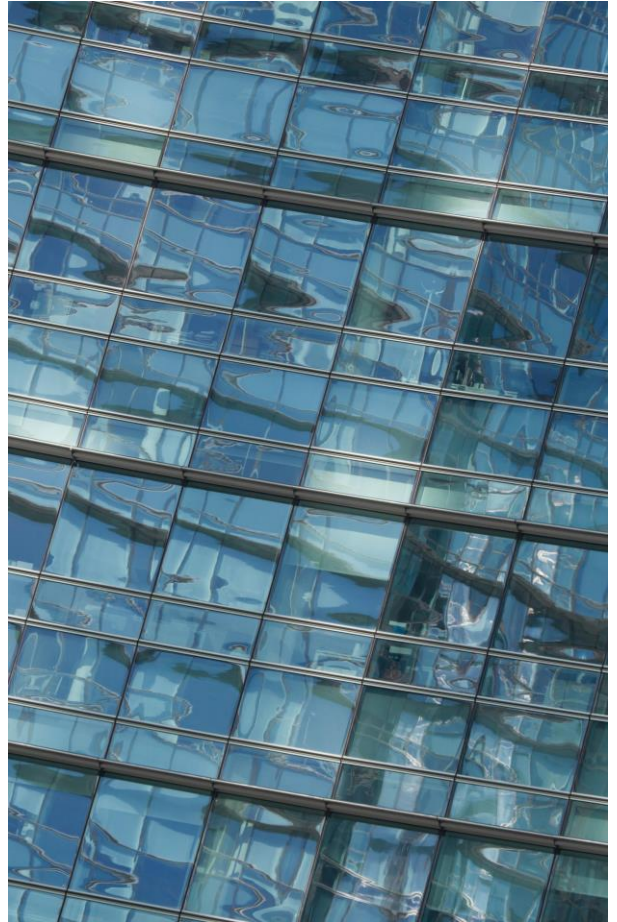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독립지점에서 종속지점으로 전환시 손실 이월

제 218/2013/ND-CP호 시행령에 따라, "기업 유형 전환, 소유권 변경, 분할, 분리,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법인세 ("CIT") 납부 의무 (해당되는 경우 벌금 포함)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기업 또는 프로젝트는 전환, 분할, 분리, 합병 또는 통합 이전에 법규정에 따른 CIT 인센티브 및 손실 이월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CIT 인센티브 (이월되지 않은 손실 포함)를 상속 받을 수 있다", 세무총국에서는 지점이 독립 회계에서 종속 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실 이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현행 CIT 법규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유형으로 전환, 소유권 변경, 분할, 분리 및 합병의 경우에만 손실이월을 규정한다.
- 독립회계지점이 종속회계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손실이월에 대한 안내규정이 없다.

(세무총국의 2024년 4월 9일 제1442/TCT-CS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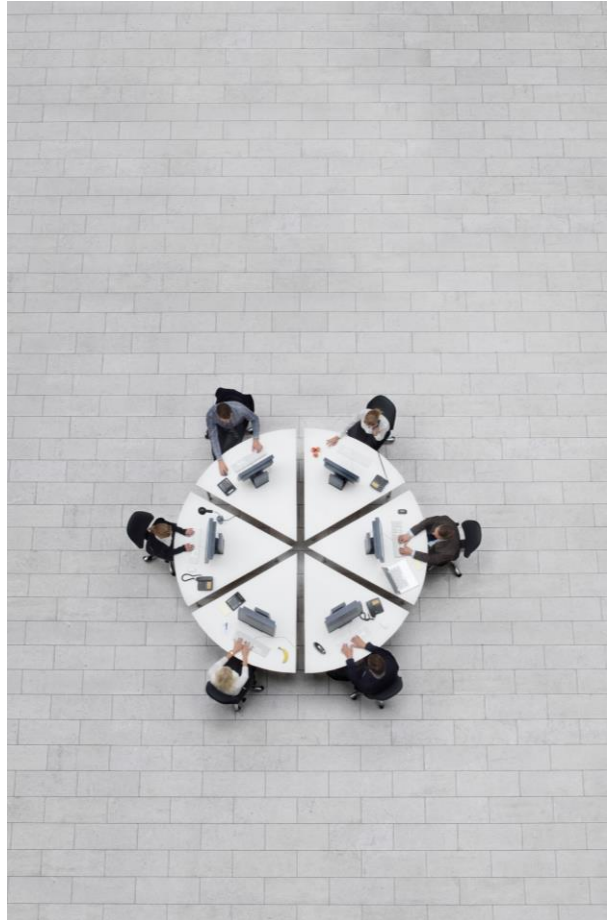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지점 운영 종료 후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VAT") 이전

지점이 영업을 종료하고 세금 코드를 말소했는데 영업 종료 시점에 매입 VAT가 완전히 공제되지 않을 경우, VAT법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 지점은 매입 VAT 잔액을 본사로 이전하여 규정에 따라 계속 신고 및 공제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4월 15일 제1569/TCT-K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PIT 확정신고 시 보험료 공제 안내

급여 또는 임금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여러 곳에서 3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가 과세정산을 하는 시점에 실제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회사한테 대신 PIT 확정을 수행하도록 위임 가능하다 (해당연도에 12개월 충분히 근무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포함).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퇴직연금이 규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PIT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험 기관의 수금 영수증 사본 또는 회사의 보험금 징수 확인서 (회사가 보험금을 징수하고 대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4월 2일
제16888/CTHN-TTHT호 OL)

세금 강제징수 대상기업의 법적 대표자 출국

한 개인이 더 이상 세무행정 에 관한 행정결정을 강제 집행된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아니며, 기업의 세금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 38/2019/QH14호 조세 행정 법 제 124 조 7 항, 제 49/2019/QH14호 베트남 시민 출입국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이 일시적 출국 중단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세무행정 에 관한 행정결정을 강제 집행되며 세금납부의무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출국 일시중단될 수 있다. 납세자의 직접 관리 세무국의 지도자가 지역의 실제상황과 세무관리상황을 근거하여 출국 일시중단 경우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4월 10일 제1457/TCT-QLN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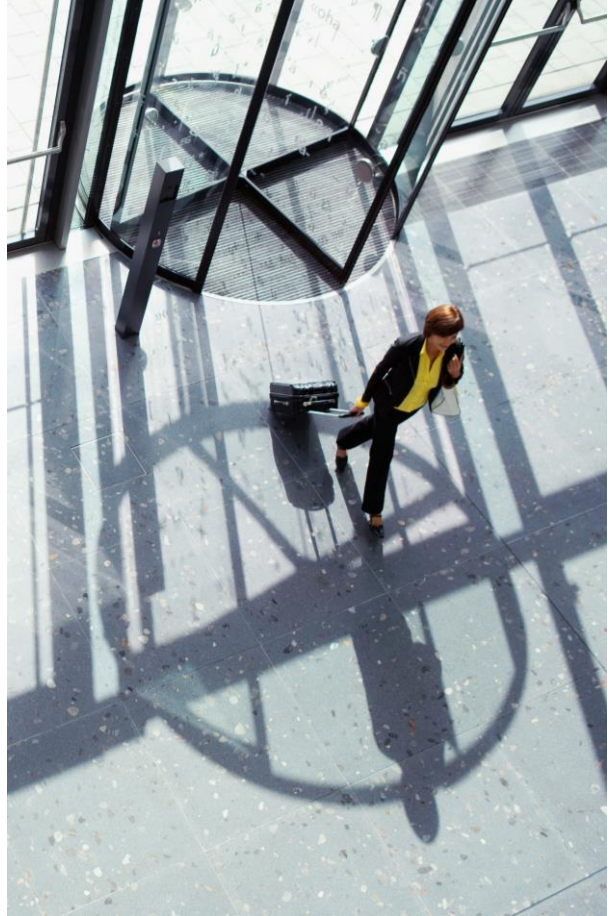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문서

저작권 서비스에 대한 FCWT 신고 및 납부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기업과의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베트남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계약자의 소득은 FCWT가 부과되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DTAA")의 제4조 및 제205/2013/TT-BTC 호 시행규칙의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계약자가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DTAA 협정에 따라 세금면제 받을 수 있다. DTAA에 따른 세금면제·감면 신청절차는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이행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4년 3월 28일 제 2037/CTBGI-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관세 및 무역 지침 문서

“AKFTA”) 한 -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AKFTA”) 원산지 규정 이행에 관한 개정 및 보완

2024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는 AKFTA의 원산지규정 이행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 & 보완하기 위한 제04/2024호/TT-BCT호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원산지가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 및 AK양식으로 원산지 증명서 ("C/O") 발행을 위한 역내가치비율 ("RVC")의 직접 계산 공식이 추가된다;
-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직접 또는 간접 RVC 계산 공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선택된 공식은 그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해당 회계 연도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C/O는 영어로 A4용지에서 자필 서명 및 날인된 하드카피 또는 전자형식에 대한 규정을 충족한다;
- 협정명은 "한 - 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으로 변경된다.

(재무부의 2024년 3월 27일 제 04/2024/TT-BCT 호 시행규칙)

화학 제품 및 기본화학물질에 대한 VAT 감면

"기본화학물질"로 확정된 상품은 제94/2023/NDH-CP호 시행령에 따라 VAT 감면목록에 제외되지 않으며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화학물질로 확정된 상품은 VAT 세율 8%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화학제품으로 확정된 상품은 VAT 감면 대상이 아니며, 세율10%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화학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담당하고 VAT신고를 위해 상품이 기본 화학물질인지 화학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4월 2일 제 1382/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특수 전자 장비에 대한 VAT 감면

특수 전자 장비로 확정된 상품은 VAT 감면 대상이 아니며 정부의 제 94/2023/NDH-CP호 시행령의 부록 III, 섹션 IV, 파트 B, VAT 10%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VAT 신고를 특수 전자 장비와 관련 질의사항을 안내한다.

(관세 총국의 2024년 4월 11일 제 1542/TCHQ-TXNK호 OL)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래에 대한 현지 수출입 통관절차

베트남에 A사가 외국에 법인 또는 개인인 B사와 거래하고 B사는 외국에 다른 C사에 물품을 판매하지만, 해당 제품은 C사 (베트남에 상업존재가 있음)가 베트남에 D사에 배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제 08/2015/ND-CP호 시행령, 제 35.1 조에 따른 내국 수출입이 아니다.

(Bac Ninh 관세국의 2024년 4월 12일 제 631/HQBN-NV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